

박형준 / 5월 / 기출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2	17	10.5	57.5	1	2.94%	5	34
562188	17.5	11	18	10	56.5	2	5.88%	4	
563528	15.5	10.5	18	11	55	3	8.82%	3	
562576	15.5	8	17	12	52.5	4	11.76%	5	
556423	14.5	11	15	11	51.5	5	14.71%	4	
563199	16	10	16.5	8.5	51	6	17.65%	5	
562176	12.5	12.5	16.5	9	50.5	7	20.59%	4	
556383	17	9	17	7	50	8	23.53%	4	
562320	16	11.5	14	8.5	50	8	23.53%	4	
563195	16	10.5	15	8.5	50	8	23.53%	4	
562578	16	8.5	16.5	8.5	49.5	11	32.35%	4	
562350	15	8.5	16	8	47.5	12	35.29%	5	
562508	17	8	14.5	7.5	47	13	38.24%	4	
561281	12.5	8.5	16	9.5	46.5	14	41.18%	4	
563029	13.5	8	17	8	46.5	14	41.18%	4	
563288	17	9.5	15.5	4.5	46.5	14	41.18%	5	
562734	14.5	10.5	16	5	46	17	50.00%	5	
562358	13.5	6.5	16	8	44	18	52.94%	5	
563474	15	7	17.5	4.5	44	18	52.94%	5	
562403	13.5	6.5	14.5	9	43.5	20	58.82%	4	
563033	13.5	9	15	5	42.5	21	61.76%	3	
563002	14	6	14	8	42	22	64.71%	5	
556219	13	6.5	13	9	41.5	23	67.65%	4	
562305	15	5	12	9	41	24	70.59%	5	
562397	15	2.5	15	8.5	41	24	70.59%	4	
562189	12	7	14.5	7	40.5	26	76.47%	4	
562342	12	10	10	7	39	27	79.41%	3	
562924	15.5	0	16	5.5	37	28	82.35%	4	
562408	10	8.5	11.5	6.5	36.5	29	85.29%	5	
562326	12.5	5	11.5	5	34	30	88.24%	4	
562354	13.5	0	13	6	32.5	31	91.18%	5	
562372	11.5	9	2	9.5	32	32	94.12%	5	
562349	4	0	18	8	30	33	97.06%	5	
562469	14	0	0	0	14	34	100.00%	4	

박형준/5월/기출GS/1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특허법 기출은 그 러프함을 경험해보지 않고 시험을 치를 경우 높은 확률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기출의 중요성이 높으니 이번 기회에 출제 스타일에 보다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은 간접침해 관련 논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전용품의 공용성과 전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가 부가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이용침해 관련 판례와, 전용성 관련 구성요소 부가된 경우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판례들을 통해,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 확실히 적어주시는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균등침해 관련 간접침해 판례를 작성해주시고, 7점 분량에 맞게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논점은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분량을 채우지 못한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적당히 양 맞추어 써주시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특허권자 갑의 전용품 양도로 인한 권리소진이 주논점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갑의 특허발명이 방법발명으로 주어졌으므로,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에 대해 두껍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들 통통하게 그리고 그에 맞춘 포섭도 충분히 작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논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간접침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보호범위 숙부판단과 무관함을 이유로 비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작성해주신 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작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논점을 놓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존재한다는 점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간접침해 논점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A급 논점인만큼, 충분히 대비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혹시 논점 놓치신 분들도 오답노트나 기본서에 표시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경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1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FRAND 선언 관련 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그 중요도를 낮춰 준비하는 논점인만큼,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판례를 높은 현출도로 작성해주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채점하면서 느낀점 작성해보겠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가 허락받지 않고 실시한 자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FRAND 선언을 한 자의 특허는 무조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오해하신 답안을 작성하셨습니다.</p> <p>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나, 합리적으로 실시로 산정하여 성실하게 협상 시도를 하는 자에게 침해금지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니, 결론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FRAND 선언을 한 자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권리남용 관련 판례와 함께, 단순히 FRAND 선언한 것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흐름으로 작성하신 경우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FRAND 선언을 한 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문제로, 해당 논점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판례의 결론대로, 보전의 필요성이 흠결되어 가처분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답을 틀리셨는데, 결론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p> <p>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주신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3. 소결

FRAND 선언과 같은 팽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대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한 팽돌 대비는 자칫 강약조절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나치게 팽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경계하면서, 각자의 시간과 여유에 맞춰 최소한의 목차 또는 결론 정도만 숙지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자주 출제되는 A급 빈출 논점이므로, 많은 연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특허의 정정제도에 대한 단문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정정심판과 별도로 특허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도 작성하라고 한 만큼, 판례가 판시한 취지를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단문의 경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독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 정정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작성함에 있어, 성격이 다른 정정심판과 별도 정정제도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작성해주신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고, 또한 주체적, 시기적, 객관적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신 분들도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정정심결 확정이 재심사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법원은 정정 전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재심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해당 전합 판례를 작성하지 않은 답안도 다수 있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사안의 경우 특정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주어졌으므로, 해당 판례를 꼭 작성해주셔야 하고, 함께 관련된 조문인 164조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문 판례 사안의 기본 구조로 작성한 경우가 가장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결핵발명의 진보성 위반 극복조치 중, 진보성이 인정됨을 다룰 때, 반박할 수 논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성 판단방법 관련 판례들을 충분히 작성해주시고, 해당 판례들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각적으로 반박논리를 작성해주신 답안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한 일반론만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해당 판단방법을 기초로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이 사안포섭이니, 빼먹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할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소결

설문 1번과 같은 단문 문제 역시 내용은 잘 알더라도 처음 맞닥뜨릴 경우 한 번에 가독성 좋게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험이 누가 더 실제로 많이 아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잘 적어내느냐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공지에외주장제도 및 국내우주, 조약우주가 혼합된 이익제도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이익제도의 경우 4번문제처럼 날짜가 여러개 나와서 매우 헷갈리게 하므로, 타임라인을 그리는 등,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직접 권리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제 3자의 공지를 용인할 의사가 있다면 의사에 의한 공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복수의 공지가 있는 경우, 최초 공지로부터 1년 이내 적법하게 공지에외 주장할 경우, 해당 공지에외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결론은 잘 맞춰주셨으나, 논리 흐름이 일부 부정확한 답안이 보였습니다.

(2) 설문 2

설문 2-1의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물었으므로, 국내 우선권 주장이 주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논점을 잘 찾아주셨으나, 사안 포섭시에 이렇게 날짜가 주어진 경우, 그냥 “국내우선권 주장하면 된다.” 가 아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날짜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량발명은 선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량의 정도에 따라 최초공지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날짜를 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문 2-2는 조약당사국 선출원이 존재하므로, 조약우주가 주논점입니다. 해당 설문 역시 날짜를 넣어서 등록받기 위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포섭하시는 것이 인상이 좋습니다.

3. 소결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익제도의 경우 날짜와 함께 출제될 경우, 타임라인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굉장히 헛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우주와 조약우주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Q 문제-1

I 실문(1)

5 18

1 문제 1 - 간접침해법 121조

직접 침해시 고지 개연성이 인정되면 경우 침해로 간주
한다. A의 중요 구성 (에 B를 부가하여 사용
하는 것이 침해인지 문제가 된다

2 물건 발명의 경우 - 121조 1호

물건 발명의 생산물 만 사용할 수 있는 생산물 하거나 사용
하는 행위는 물건 발명 간접 침해이다

3 진용품의 요건.

① 공용성 과 ② 권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요건 ① - 공용성 충족 여부 (각각)

(1) 이용 침해 관련 회사

정당하게 새로운 권을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호가 발생하는 별론 특히 발명
의 행위가 위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2) 침도 - 직접 침해 개연성.

이용 침해로 특히 발명의 침해가 되는 경우 고려
하면 5성이 부가 되었는지 사실만으로 결정해서



제거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안의 경우

C에 D의 부차로 일체성이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
(+D)는 여전히 甲 특허 발명의 구성이다.

5 문제(3) - 권유성 특허 여부 (각각)

(1) 관련 제도에

권유성에 관한 특정한 경우 2로 인해 타인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 권유성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D의 부차로 타인이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이 없이 권유성이라고

6 결론 - 2주장 부당

구성의 부가만으로, 쉽게 통칭 못하고, 일체성 상실 주장해야 한다

7 문제(1)

1 문제(1) - 권유성 특허 여부 (각각)

(1) 권유성에 관한 제도에

권유성이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균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도에 관한 간접 증거로 인정 하도 있다
따라서, 균등한 권유성을 사상으로 배제할 것 아니

(2) 검토 - 직접 함께 개연성



공정하게 특정하게 인정하고 같은 이상 한정하게
 취지상 합쳐 볼 것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C를 C'로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부임안재
공정 배내 권유라고 할 것이다

2 요건② - 인용상 항구 여부 (각각)

(1) 관련 부속제

공정 배내 권유를 사용하는 전 그와한 사용으로
 인해 하본도가 생겼다는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여전히 권유 부기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안의 경우

C'에 $A+BC'$ 부를 의미에 라본가 확인
 되기 많은 이상 C'는 여전히 $A+BC'$ 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을 권이다

3 C' 권유항 여부 (각각)

①공정항과 ② 권유항을 모두 만족하므로 C'는 권유항이다

4 결론 - Z의 판매 간접하게 성립

Z의 C'로 판매 하는 것은 공동하게 개명성
 고해서 간접 합쳐간 할 것이다

II 실문(3)

1 무제권 - 권리 소권 여부

경량한 권리가 특허 관련 물건은 양도하게 되면
권리 소권 되어 특허 발명이 특허권 소권이 되기
않는다. 방법 발명이 소권 여부를 살핀다.

2 방법 발명의 간접 침해 - 법 121조 2호

방법 발명의 사용에 반 사용자는 물건은 생산 양도를
을 하는 행위로 하여 간접 침해 성립 한다.

3 甲의 양도로 권리 소권 여부(1) 방법 발명 소권 여부 제1

방법 발명이 권유이고 다른 발명자 차등은 둘이
유가 없으므로 방법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직접하게 양도하면 권리 소권되어 바뀐다.

(2) 방법 발명이 실질적 구현된 물건 제1

방법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 이란.
다른 용도 없이 방법 발명에 만 쓰이고.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비중이 큰 구성요소를 의미 한다.

(3) 방법 발명 소권 인정 논리 제1

방법 발명이라는 것이 만일 물건 발명과 차이로
물어봐서 없고. 반대로 특허 발명을 제외하려 는

A가 B가 되어. 각각은 자를 및 거래 안변
을 위해 인정 함이 타당하다.

(A) 사안의 경우

1) C가 실권적 권한을 가진 여부 (각각)

C는 방법 별면의 권을 이쁘. 각각은 가
업고 핵심적 구성 권이다. 또한 권을 가진 이상
비율이 있어 실권적 권한 물건이다

2) 대가 확보 가치 (각각)

정당한 권이라 무의 적법하게 2에게 양도하여
권이 생긴 되었다:

4 결론 - C의 권리 배합

C는 권의 50% 보유므로 C사용은 배합이다

IV 실습(4) 4.5

1 문제점 - 각각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권한에 이의 : 추1353

이와 같은 간판과 승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진정
인 C의 권리 범위 확정 확인하는 권리 인정
한기 문제가 된다

2 판례

각각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 간판의 경우



권용으로 당연히 권리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확인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3 바판

간접 합계는 함께 간주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 범위에
인정시. 3차 인숙 제재와 특히 발명자 범위가 부당
하게 확장되는 문제가 생긴다

4 검토 -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목적과 방법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권리관계로 최종적으로 확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권용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수제가 타당하다

5 사안의 경우

물론 다른 특허 발명자 권용을 이유로 이를 확인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 특허성 (특성)

특이 간접 합계 분쟁 해결을 위해 (은 특장점에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특히 이후 인정되는
특성 인정 된다

12

문제 -2

I 실문 (1)

4.5

1 문제 1 - 法 126조

표를 특허권자인 甲의 향배로의 향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이다.

2 甲의 표를 특허 (FRAND)의 의미와 유형 (각각)(1) 표를 특허 의미

공중 사용 기어를 특허 하기 위해 인정 하는 제도이다.

(2) 표원 ① - 공정 (FAIR) (각각)

공중 사용 기어를 인정 하기 위해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표를 제정기에서 공중으로 개각되어
모든 층류 한자

(3) 표원 ② - 합리 (Reasonable) (각각)

표를 특허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인공성과 비교할 관련 타의 합리성 인정 코드

(4) 표원 ③ - 비차별성 (Discriminatory) (각각)

표를 특허로 특허 되기 위해 실사된 실정 등에
합리성의 자세에 임해야 한다

(5) 소결

甲이 표를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위무한 수행 한다면 합리적이 볼게가 있다.

3 甲의 침해금지 청구 인용 여부 (각각)

(1) 표준 특허의 침해금지 청구 배타권 권리의 위계

표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만으로 배타권 권이라고 볼 수 없다. 침해자에게
까지 반드시 특허권 행사 하라, 해라 하는 관에

(2) 특별한 사정 위계

표준 특허권자가 실제라니게 표준 특허권 하
해 많은 경우는 침해금지권이 허용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1) Z의 허락사도 (소극)

Z는 甲에게 허락 시도 하여 거절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소결

甲의 침해금지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된다

II 실문(2) 3

1 권리 남용의 의미

권리 남용 중 모든 각종 침해는 상당한 행위
하는 경우 문제인데 표준 특허의 경우 문지 판

2 甲의 침해금지 청구 모순적용 요리에 반하는지 (소극)

(1) 관철 위계

플로른 특허 카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에
 대한 기제를 가리기 어렵고. 비차별적인 이유로
 다하기 많은 특별한 사정 있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1) 특허의 우선특위 만으로 권리상용여부 (소극)

플로른 특허로 특허권자는 사실 만으로 특허권 행사가
 모순되는 정당이익을 볼수 없다

2) 비차별적 행위에 대한 모진 불응 (소극)

같은 특허 플로른 특허에 대하여 실사권은 사소한
 것을 강제하는 이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 2 극량 부당

같은 실사권 소정 시로 많은 실사행위로 부당
 가 권리 상용이라고 볼수 없다

II 실문 (3)

45

1 물레짐 - 힘해금지 가리분. 원사 관행법 300조 2항

힘해를 끼리 하게 은 특위 시로가 있을 경우
 보인 필요성도 우해 힘해금지 가리분 가능하다.

2 힘해금지 가리분 요건

① 외보인 해원 과 ② 보인 필성이 필요하다

3 요인 ① - 피보전 해권 구복 (적극)

앞사람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에게는 法
126조기 황해 조기 황권이 인정 된다

4 요인 ② - 복귀권유성 구복 (소극)(1) 관련 배제

복귀 권유는 황해할 경우, 황해 조기 황권을 인정
하는 조과는 별개로 황해 조기 가처분 행사시
본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다

(2) 질문 - 비차별적 특성 및 공정성

복귀 권유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므로
황해 조기 황권 조는 별개로 관련 조기 황해 조기
가처분 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사안의 경우

특히 가처분 승인 신청에 대해 FRAND
사안을 한 이상 본권의 필요성을 인정 할 수
없다.

5 결론 - 가처분 승인 거절 예상.

FRAND 선언한 이상 공중 이익 기여 의문을 고려하여
본권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각 결정하여 허용해서는
안된다

문제-3

1 정령 제도 의 취지(1) 정령 제도 의의

특허권과 사후적인 권리를 위해 스스로 발명을
을 보장. 정령 제도 이다.

(2) 제5제가 실시할 취지

특허권 기술 발권과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주는 보상 그 기여 과 불가
방은 사후 발명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2 정령 심판과 별도 정령 제도(1) 정령 심판 법 136조

특허권과 스스로 특허권 보충 권력 하는 제도로
심판원에 제기 가능 하다

(2) 별도 정령 제도 - 정령법 법 133-2조

불특정 다수 특허권자 개시 권리 회복을 위한
정령 법 제도 이다

(3) 인정 취지 제5제

정령 심판에 전수에는 특허권으로 관건이지만 정령
취지는 불권과 함께 같이 심리 의무로 강조
하고 회복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3 정정심판과 정정 항의 공종권.

모든 특허권과권이 항구하며, 특정 1323의 2가
조 1363의 기권은 권한내 권한내 정정항의 범위
 다 반이 공종권. 정정 항의. 상사한 특
권. 실질적 항의, 특정 특허권이 공종권

4 정정심판과 정정 항의 라이선스

(1) 시각적 요건

정정 심판은 원심판 계속 항의에 특정권 공종권
 가능하고. 정정 항의 원심판 계속 항의 이
항의 계속 항의 시각적 요건 제한 권

(2) 항의 시기

정정 심판은 특정권 계속 항의 항의 항의
정정 항의 특정권 계속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3) 특정 특허요건 관련

모든 정정 후 특정 특허요건 공종 항의
정정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 특정(2) 항의 -
 계속

II 실문(2)

3

1 클래짐 · 法136조 10항

권징 권징이론 소용초차 임논제 이조 인제 개선
사기가 되리기 율기 된다

2 징정 심판 인용심결이 재심사유 요부 (소3)(1) 권제 취해

징정 심판 확정으로 항쟁이 바뀌는 것을 인정한다

(2) 권함 취해

징정 심판 인용심결 확정 되어도 판결기 기조 자의로
사실 관계 변화가 없고 항쟁이 확정적으로 소용바뀐
대도 볼 수 없다. 소용리면론을 고려 할 때 징정
인용 심결은 재심사유 요부가 될 수 없다

(3) 심조

명문 정정이 인정하고 (소용론) 반어방법론이 함께
되지만 권함 취해가 과중하다.

(4) 사안의 경우

[판결 기조의 변경]이 항쟁권을 소용바꾸지 않고
[변론 기밀]을 과시 필이나 하므로. 재심사유 요부가
아니다.

3 결론 - 징정된 항쟁을 부안 판결

재심사유 요부가 아니므로 징정된 항쟁 판결한다



III 실문(3) 2

1 출제권 - 소용 권리 法 1643 2항

법관은 강사가 권리 신청이 있을 때 소용을 권리
할 수 있다. 소용 권리 해야 할지 묻는다

2 法 1642 심판 위수제 - 대량.

소용 권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관관 허용권
사실상 권리 사정으로 법원이 대량에 적용한다

3 甲 주장의 타당성 (소극)(1) 대심사위 관련 위수제

주로 심판 권리 개별 개선 등 정정 심정이
특정 원고 하위라고 개조사정 - 요구 되지 않는
라고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1) 정정 심판 항고 기조 변화 (적극)

정정 심판 소용으로 인해 기조된 사실이 바뀐다

2) 항고적 소용 변화 여부 (소극)

정정 원심 심판 기조 등이 있을 시 ~~항고적 소용 여부~~ 고려

4 결론 - 甲 주장 부당

소용이면 동등 대심사위 요구 아닌 이상. 甲 주장 부당하다



IV 실용(4)

1 음레질 - 권보성 - 특허 2항

기초발견 및 산업발견을 위해 특허 출원을 신청 발명
으로 특허 쉽게 출제하면 안된다. 권보성 문제가 된다

2 결합 발명 권보성 관건 방법

(1) 관건 대상 위수제

각 구성요소가 아닌 위수제 결합의 관계를 가지
고 관건 해야 한다

(2) 관건 방법 위수제

신청 문헌과 하비로 차이 기재 차이를 상세
구분 할 수 있는지 관건해야 한다

(3) 결합유연 위수제

신청 문헌에 결합으로 인한 큰 차이점이
있는지 레방 사건을 살펴 보아 상승효과
유무를 관건 한다

(4) 상승효과 위수제

결합으로 인해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점
권보성으로 인정하는 주행할 크기가 된다

(5) 사후적 고찰 크기 위수제

결합 되어 크기는 사실은 안 상대적 쉽게
생기 할 수 있다고 관건해서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1) 반박 ① - 권제

실행 문헌 1, 2, 3 에 3성원 A, B, C가
 각각 이 권리 지원하는 사권 방으로 권보성
 목적 이렇다

(2) 반박 ② - 결합 요인

실행 문헌 1, 2, 3 에는 A+B+C의 결합으로
 인한 상승효과 근을 확인하는데 중요의 기여가
 이렇다.

(3) 반박 ③ - 유기적 결합의 권제

각 3성원 A, B, C 가 특정방으로 큰개
 할 때 보다, A+B+C로 인해, 결합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인원 되고, 이는 중요의 기여 라에게
 이렇다

(4) 반박 ④ - 시효적 고갈 권리

A+B+C가 이는 완성권이 있다는 사실은 안 한
A, B, C로 분리 A+B+C로 유지 해 서는
 안된다.

(5) 결론 - 권보성 인정

A+B+C가 실행 문헌 1, 2, 3으로 분리 중요의
 기여가 쉽게 변명 할 수 없 다.

10.5

문제-4

I 실문(나)

4.5

1 문제풀이 - 공리 예외 규명 제로 法303

자기 공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임 요건 하에
공리하기 많은 권으로 보는 제로 이다

2 시기적 요건 충족 여부 (적극)

공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2015. 03. 02로부터 1년 이내. 2015. 03. 03에 했다

3 이사에 의한 공리 여부 (적극)

(1) 이사에 의한 공리 관련 제수제

이사에 의한 공리는 출원권자가 직접 공리 한 것
뿐만 아니라 공리를 용인하여 이사자 또는 권자로
포함 된다

(2) 사안별 경우

2개의 간략화된 공제 2의 후속 공제로 승인
하려는 여부가 필요하므로 이사에 의한 공리 여부

4 절차 - 法303 1항 1호 (적극)

출원시 후의 통시하고 30일내 출원 서류 제출
해야 한다. 보정 기간 보정으로 가능 한데 (法303 2항)



복수의 권리 여부가 문제이다.

5 2015.03.27 공리에 공리예외 주장 호격 여부(각각)

(1) 복수의 권리 위상제

최초가 권리가 위상된 경우, 이를 통해 불관방 권한
이 있을 후속 권리가 있으면 중복권이 인정되는
하에 허용하고 있다

(2) 사망의 경우

2015.03.02. 2차 간담회와. 2015.03.27의
2 4명 실연의 권리가 사망이 이므로 복수의
권리권자

6 또 주장 부당 - 결론

甲의 권리 예외 주장 타당하여 주장 부당하다.

II 실문(가) - 1)

~~1 개~~

2.5

1 대응 전략 - 개량의 정도

개량 정도에 따라 - 관심권이 같거나 개량이 같다면.

2 개량이 미미한 경우

(1) 국내 우선권 주장에 法55조

출원인 편의를 위해 신출원권을 부여 제정된 법령들은
3개 항목 기초이다

(2) 무권 밀 철거

신출원을 발원수 발원자가가 신출원 최초 명세서 공개시
출원인이 인정으로 변경하고 출원서 취기
34개 신출원 명세서 변경 된다

(3) 사안의 경우

2015.08.03 으로 부여 1년 이내 3개 항목 항목
하여 X'에 대해 변경 가능하다

반대

3 X'항목 이 큰 경우

→ 공거에의 구상 가능

(1) 공거에의 구상 대의 - 법303

신출원 권 변경 가능!

출원인 편의를 위해 3개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2) 사안의 경우 - 이나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2015.08.03 변경 가능하다. 2015.03.03으로 부여
1년 이내 공거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부 항목 (2)-2

3.5

(1) 조약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1) 법 543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출원인 편의를 위해 3개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로 소금 찬조 해주는 리노 이다

(2) 요인. 실라.

선출권인인 취성아 권유성이 인정되는 선출권 리노
 명제 서명 로반 법제 내미서 출선해야 하고
 출선제 하기 리노 국가 변형필. 등 병로 리노
 리노이 필요 하도

(3) 사안기 경우

2015. 08. 03 으로부터 1년 이내 로양개
 권국당 해야 하도. 2015. 03. 02 가기 권리
 가 리노 가 리노.

2 공리 메리 규공 필요성 (적극)

(1) 국내 선출권 규공과 하이

우에 선출권 규공이 경우 선출권에서 권리 예외 규공
 시 후출권으로 인정되는 병로기 규공이 있으나
 로양 선출권 규공은 그렇기 나내하도

(2) 사안기 경우

2015. 03. 02 로 부터 1년 이내로 출선하도
 로양 선출권 규공과 권리 예외 규공은 해야
 출권을 출권 가능 것이라 (도 303 1항 1호)

필요성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5.5

I. 실문 1번

4.5

1. 문제의 해 - 法 973

청구항목이 보충받은 사항을 가하는 바 간접침해가
문제된다

2. 직접침해 여부 (특)

구형판면의 특이 여타 직접침해가 부정된다 (특례)

3. 간접침해(1) 여타, 특이 (法 1213)

특이권은 특허재산권인 바 침해판정이 비용이하여 그 권
한계를 관하여 간접한다.

(2) 특허발명의 범위 (法 1213 1호)

특허발명의 범위 생략한 사항은 문헌을 생산, 양도 등
하는 범위 간접침해이다.

4. 2 구형의 특성(1) 이용침해 (특례)

전용특기 구형을 부가하여 유사한 작용효과가 발생
했더라도 간접침해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이용권해 정산 (부채)

이중발명임에도 불구하고 ① 특허발명의 새로운 기술 범주를
 부가하 ② 요건을 전부 포함하 ③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④ 알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용권해이 해당하~~ ⑤ ~~권정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사안

제1 발명은 D를 부가하여 C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용권해 여부가 되는 이용권해 여부도 간접권해 발생가능
 성이 있으므로 제1 권은 "부정" 하.

5. 결론

제1 권은 "부정" 하

II. 실문 2번 3.51. 논점 - 권정산 (부채)

특허발명의 범주를 변경된 범주가 권정산 중 특허발명
 권리범위내 속하는 이므로 자극침박을 가해 있는 과
 사할 변형인 침박을 부가한 특허발명 신권정
 능이 불가피 왜문어다 권정산 중 간접권해가
발생한지 판정된다.

2. 특정 경우 간접침해 판정

(1) 특례

특허법상 구형의 권리가 변동되어 특정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헌법.

(2) 사안

C와 C'이 특정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 것이다.

3. 특정 요건 (특례)

- 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② 작용원리의 동일성
- ③ 구성요건 동일성 ④ 작용원리가 아닌 것 ⑤ 이익의 실현된 사안이 다른 것을 제외.

4.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정

(1) 동일성 판정 (특례)

발명의 성격과 증가수준을 확인하여 특허법상 과제해결원리에 기초된 기술사상의 핵심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탐하여 판정해야 한다.

(2) 사안

구형 C는 "전통"인 바 C와 C'은 특정 관계 이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이다.

5. 결론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II. 설한 3번. 4.5

1. 문제의 소의 - 소의이론

특허발명이 직접된 특허권자등으로부터 양도된 것 특이된
목적이 달성되기 소원된다는 이론으로 자부권을 위함과 개제
인원을 소원히 기함이다.

2. 방법발명의 소의 판단 (실패)

(1) 방법발명 소의 판단방법

특허권이 "방법을 실용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직접에
양도한 것 특이된 목적이 달성되기 양도한 소의
기도 특허권이 현저히 바뀌지 않는다.

(2) 방법발명을 실용적으로 구현된 물건

① 사의특정성 "본래 용도가 실용"이라고 다른 용도가 있다
② "기술상 확성이 실용적으로 구현된" ③ 전체공정
까지 파악한 방법을 고려하여 소원여부의 특이된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3) 논거

① 물건의 가용한 위함과 개제 ② 특허권자의 예가
확고히 예측 ③ 방법발명을 소의 대상으로 배제할 경우

순쉽게 타사가 가능하며 물건번호와 거의 동일한 것은
특허 소원 인정받지 못함.

(4) 사안

1) 소원여부

적법한 특허권자인 A에게 물건 C를 개입한 B 전제품
C는 B의 특허권의 한계가 미치지 않는다

2) 방법발명도 실용적으로 구현된 물건인지

C는 권태품이므로 ① "본래 통가 특허 발명의 실시예"로
② "기술사상의 핵심일 것이므로 방법발명도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이다.

3) 소원

B의 특허는 소원되어 주의 실사는 침해가 인정된다.

3. 결론

주의 실사는 침해가 인정된다.

IV. 실문 4번

3

1. 특허의 소위 - 권리범위 현상권 (법 135조)

간이, 신속한 분쟁의 예방 및 증진을 위해 특허권
숙의판으로 밝히는 상이다. 권태품은 현상권 범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 전통의 특하여 심판청구서 (2부)

(1) 취지

- ① 법 제 213 조 2항은 방법발명에 관한 방법이 사용된 물건은
실용하는 것을 침해로 간주한다 ② 권리남용의 인정은 혁신
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본질적 가치에 반하는 목적이므로
 ③ 방법의 실시만으로도 물건이 "대비"되는 물건은
혁신대상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사실

방법의 실시만으로도 사용된 물건인 권양공 (이하 "대비")
되는 물건은 혁신대상발명으로 특하여 심판될 수
없다.

3. 결론

특허 심판은 국방하다

⟨끝⟩

<문제-2>

8

I. 셋째

3.5

1. 문제의 예 - 침해리행 (法 213)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주어 침해한 것에 문제의

2. FRAND 선언

(1) 예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허가
하는 것의 양 당사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침해리행 거부

1) 원칙

원칙적으로 침해리행이 가능하다

2) 예외

적법하게 실사하는 노력한 자 침해가 인정된다

(3) 사안

1) 원칙 적용 여부

부라 주은 FRAND 선언은 한 바 침해리행을 할
수 있다.

2) 예외 인정 여부

주이 적법하게 실사하는 노력한 자 침해가 인정된다

3. 결론

예비사장이 부채 있는 바 인통판권인 예성원의

II. 실문 2번

1. 신약의 권리

실문의 국문, 신약, 성서들이 바뀌어 신약권을 띠어야 한다.

2. 구약의 권리 권리의 여부

(1) 외국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권리를 준 것
이든 신약의 지배권 방식이다.

(2) 사건

FRAND 원칙은 합당한 시점에서 구약의 권리가 권리
행위 하기 당연한 권리 준 것 아니므로 타의
권리 행위 권리 행위 당연 않는다.

3. 결론

구약 권리가 무엇 부당 하다.



17

<문제-3>

5.5

1. 특허심판 (법 136조)

특허권리의 범용된 보충을 인정하는 심판의 임무는
이에 정함이 가능하다.

2. 특허심판 (법 136조의 2)

특허권의 범용된 보충을 인정하는 경우
정할 수 있다.

3. 특허 (제13조)

무효심판 제1항 중이 새로운 "특허심판 청구" 중
특허를 등기 심판청구에 발 특허권의 범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4. 특허심판 요건

(1) 주요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136조 1항)

(2) 각각의 경우

- ① 정당한 경우
- ② 실용적으로 혁신, 변경되지 않은 것
- ③ 산업상응답이 있는 경우
- ④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당한다.



5. 특허권 관련

(1) 특허권 관련

특허권은 예외로 특허사범을 인정함

(2) 특허권 관련

① 특허권 ② 신기술가 아니 ③ 실용적으로 극명, 변형

되기 않고 ④ 특정된 특허권을 인정함

(3) 특허권 관련

무효판정이 판정한 사유를 다시 판정하지 않음.

6. 특허권

① 특허권 관련 "특허권"이 할 수 있음 ② 특허권

중 "특허권"을 가짐 ③ 특허권 관련 동일하리

7. 특허권

(1) 특허권 관련

① 특허권은 "특허권"의 생략가능함 가능함

② 특허권은 특허권 "특허권" 가능함

(2) 특허권, 특허권

① 특허권은 "특허권" 생략가능함 ② 특허권은

특허권의 "특허권" 행위이다.

II. 합계 3번

3

1. 문제의 해

무효심판과 중재심판의 중재법 제14조가 문제된다.

2. 중재 계속 여부 (중재)

① 무효심판의 상고취소소송은 중재심판이 가능하고 ② 중재심판 계속는 무효심판 가능하다.

3. 甲 구판의 타당성 여부 (소)

(1) 합리적 과잉 (소)

심판의 중재일 관행은 법원의 합리적 과잉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바람직한 상생방법 (소)

상판판례시 중재심판 판이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22회 판은 없다 무효심판도 판이 판정하는
경우 중재 판 결정을 판이 판정해 소송 증가
바람직하다.

(3) 상징 계속 중 (소)

무효심판이 상징 계속 중일 경우 중재심판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 심판은 중재판 판이 없다.

(4) 사실

부디 구판은 "부당"하다.



IV. 실문 4번1. 노점 - 권양 (法 29조 2항)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공익성이나 통치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결합발명 중 문제된다.

2. 결합발명 여부 (특구)

특의 발명 구성 A, B, C로 이루어진 두 선행문헌
1, 2, 3의 결합도 권양 부본 구성인 같다.

3. 권양 판단대상 (쇄쇄)

~~각 구성이~~ 유리하고 결합된 권양 구성이 권양을
판단해야 한다

4. 용어 판단 (쇄쇄)

① 각 구성을 분해하여 개별구성 권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② 유리하고 결합된 권양 구성을 판단
하는 것으로 구성 권양을 판단 ③ 결합된 권양
특한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결합발명 양자, 개시 (쇄쇄)

공익발명이 여러 개 중 특한 권리 양자, 중개
선행문헌이 개시된 양자 특한 권리 구성에 비하여

기술상식, 기압식 라지, 발원명량, 압계의 원리 바뀌어
결합의 용어는 관련해야 한다

6. 상승효과 (취소)

공리식들로 이루어진 각 그것의 결합은 ^{바뀌다} 원래의
높은 "상승효과" 생긴 경우 권보성이 인정된다.

7. 甲의 반박 방안

(1) 공리식 존재만으로 권보성 부정여부 (소)

공리식 1, 2, 3의 존재만으로 권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용어 부정 주장

① 선행문헌이 구성원 A, B, C를 "결합"에 대한 암시,
등이 개시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② "유기적인 결합된
전체인 A+B+C"가 권보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상승효과 주장

선행문헌의 결합으로 인한 예측되는 효과의 높은 "상승효과"
발생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결론

甲은 용어 부정 및 상승효과를 이유로 권보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4>

12

I. 선택 1번

1. 문제의 소제 - 공리제외유형 (법 302)

선출권자의 권한은 가해 원고 전 하에 공리제외 유형
하는 것으로 공리제외유형이 적용되면 문제판다.

2. 기간

권리자가 공리제외 유형의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① 공판 날인 2015년 3월 2일부터 ② 1년 내인 2015년 3월 31일 전 까지
- ③ 권리자 기간이 문제판다.

3. 약시 약한 권리 절차

(1) 약시 약한 권리 범위 (주요)

무엇 주시 약한 권리 범위 2015년 3월 2일이 발명의
내용 선행한 바 무의 약시 약한 권리 범위

(2) 절차

- 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리제외 유형을 제기해야 함
- ② 등록권까지 권한이 가능하다 (법 303 3항)

4. 2의 공판도 무의 약시 약한 권리 범위 (주요)

(1) 사실

"권리자의 약시 약한 권리인 출원일은 권리자가



공익일 필한 없다.

(2) 사안

2015년 3월 2일이 2이 공익일과 "부의 액시" 이한 공익일 볼 수 있다.

5. 공익(의무)의 특성 여부 (32)

(1) 특성 인정의 특성 (32)

3월 공익일 인정과 "공익" 인정의 특성 그 후의 공익일 인정은 공익(의무)의 특성이 아니다

(2) 사안

특히 2015년 3월 2일이 공익(의무)의 특성을 인정하는 바 2015년 3월 2일 공익(의무)의 특성이 아니다.

6. 결론

특히 공익일 인정한다.

II 셋째 과번

1. 공익(의무)의 특성 인정 (32)

공익(의무)의 특성을 인정하는 공익(의무)의 특성이 인정되고 X의 인정에 따라 인정(의무) 인정한다.



2. 요건, 절차

① 출원인이 ②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최근 명세서
 범위 내의 ④ 신출원 계속 출원 ⑤ 출원서 취미의
 신출원 절차를 따라 한다. (제35조 1항, 2항, 4항)

3. X'의 ~~판정청구~~ ~~소급부~~ (소급)

국무위원취임의 경우 "최근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은
 판정청구가 소급되는 바 (제35조 4항), X와 X'은
 명세서가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기술이라 "바뀐바"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제35조), 판정청구 소급되지 않는다.

4. X'의 개량청구가 낮은 경우

(1) 선형기술 공개 (부정)

특히 공개된 발명 X로 인해 권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사실

특히 출원일인 2015년 8월 3일부터 1년 내!

"2016년 8월 3일까지 국무위원 취임과 출원하면 된다."

5. X'의 개량청구가 낮은 경우

(1) 선형기술 공개 (긍정)

특히 공개된 발명 X로 인해 권보성이 부정된다.

(2) 사안

특허 출원 대상인 2014년 3월 2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4년 3월 2일부터 공리예비주임과 연리주임과 함께
출원해야 한다."

II. 선택 3번

1. 문제의 소제 - 조약예비주임 (법 543)

주제발명을 도출하기 전에 2명 이상 이하 주임이 관련
사안이 생기면 특허 출원방법이 변경된다.

2. 연, 조화

- ① 출원인등이 ② 조약, 상호관 가진 출원인 ③ 3인 이하
방식 내미어 ④ 1년 이내 출원인 ⑤ 3인 이상,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고 ⑥ 1년 주임이 ~~출원인을~~ ~~작성해야~~
출원 (법 542 항, 2항, 3항, 4항, 5항)

3. 공리예비주임이 조약예비주임이 적용된다 (22)

- ① 공리예비주임은 "주제발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 ② 조약예비주임의 시작은 연은 문제와 같다.

4 사인

조약무인권유임은 직통으로 앞 아 2015년 3월 2일
1년이나 공여비유임 수반하여 "2016년 3월 2일"이
조약무인권유임 할 수 있다.

<끝>

화기성!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